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2년) 삭제(안 제6조)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조정(안 제13조, 제21조)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 출품제한 규정 삭제(안 제26조 제2항)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

심의회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조항과 기존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 2차례만 연임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또한, 도내 문화예술인력을 보다 넓게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26조 2항의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출품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무제한에서 2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견이 없음.
- 현재 건축물미술작품심의원은 50명 내외로 구성(조례 제21조)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에는 10여명 내외로 선정(조례 제24조)하고 있으나, 조례 제26조 제2항에는 모든 심의위원의 미술작품출품을 제한하고 있음.
-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 조례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에 선정된 심의위원(10여명 내외)의 기피, 제척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작품 심사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